

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

□ 존경하는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김길영 의원입니다.

지난 10월 16일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체력저하와 비만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가운데, 서울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체력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체력 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이유입니다.
- 안 제16조제9호에 체력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현재 제9호를 제10호로 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